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75
----------	-------

발의연월일 : 2026. 8. 21.

발 의 자 : 문진석 · 박정현 · 부승찬
김한규 · 복기왕 · 박상혁
朴芝源 · 손명수 · 이정문
고민정 · 최혁진 · 강준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이러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어업인과 교통이 불편한 도서 지역 주민의 생활과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와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의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 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로, “적용하고, 제4호의2”를 “적용하며, 제4호의2”로, “적용하며, 제8호”를 “적용하고, 제8호”로, “적용하고, 제8호의3”을 “적용하며, 제8호의3”으로, “적용하며, 제9호”를 “적용하고, 제9호”로, “적용하고, 제9호의3”을 “적용하며, 제9호의3”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1. ~ 13. (생략) ② ~ ⑤ (생략)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 ----- ----- -----, -----제1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적용하며, 제4호의2----- ----- ----- 적용하고, 제8호----- ----- -----적용하며, 제8호의3----- ----- -----적용하고, 제9호----- -----적용하며, 제9호의3----- -----. 1. ~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1. · 2. (생략)

② ~ ②② (생략)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

-----2027년 12월 31일

-----2027년 12월 31일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②② (현행과 같음)